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75호
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
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'21.12.27.)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36호('21.12.28.)로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'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13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'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(변경)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31일
서울특별시

1. 대상지(변경)

구분	자치구	명칭(가칭)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양천구	신월7동 1구역	신월동 913~976	115,699	·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(신규)로 선정된 신월7동 913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
변경	양천구	신월7동 1구역	신월동 913~976	119,136.8	

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

구분	권리산정기준일	면적(㎡)	비고
기정	2021. 9. 23.	115,699	· 기존구역 편입부지 누락 및 면적 착오로 일부 면적정정 ·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이 없으나,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
변경	2021. 9. 23. (기존 지역)	117,773.4	
	2023. 8. 31. (추가 편입지역)	119,136.8	

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

-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

세대주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(변경 없음)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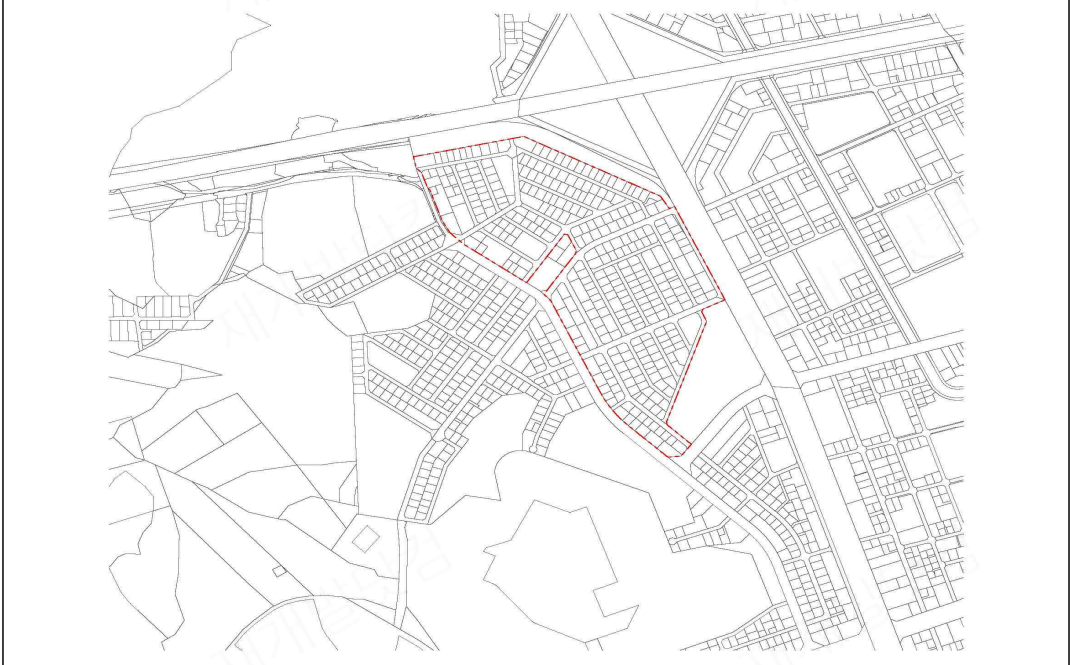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6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8) 또는 양천구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

- 관계도면
- 신월7동 1구역
- 기정



- 변경

